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1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군수
변 론 종 결	2016. 9. 27.
판 결 선 고	2016. 11. 8.

주 문

1. 피고가 2014. 10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합계 88,042,61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,804,260원의 부과처분[1]을 각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) 피고가 2014. 10. 6.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각 본세 부분을 의미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0. 12. 23.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, 위 각 부동산은 별지1 부동산 목록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)을 취득한 뒤, 그 취득가액인 985,000,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(2010. 12. 27. 법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(20/1,000)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(50%)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7,057,310원을 신고 · 납부하였다.

나. 한편, 피고는 5번 및 7번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,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84조의3 제3항의 '고급주택'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. 10. 6. 취득세 합계 141,334,780원, 농어촌특별세 합계 14,133,430원을 경정 · 고지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15. 10. 22. "피고가 2014. 10. 6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1,334,780원, 농어촌특별세 14,133,130원[2] 합계 155,468,21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,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"는 결정을 하였다[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른 세액경정 고지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. 이하 위 나.항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각 가산세 부분이 감액되고 남은 각 본세 부분 부과처분을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. 다만, 원고는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(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의 각 본세 부분을 취득세 합계 88,042,610원, 농어촌특별세 합계 8,804,260원으로 특정하고 있는바, 이 사건의 경우 아래 3. 2)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가산세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는 특수한

2) 14,133,430원의 오기로 보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취득세 등의 각 본세 부분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]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, 4, 6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지방세법령상 중과세를 하는 '고급주택'이라 함은 1구의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, 5번 및 7번 주택 각각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그 부속 불법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라도 각 6억 원 미만일 뿐만 아니라, 5번 및 7번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사실이 없는 점, 위 2개의 주택은 명백하게 구획되어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점, 원고가 위 2개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위 2개 주택의 소유자가 달랐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, 5번 및 7번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, 5번 및 7번 주택이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.

1) 관련 법리

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, 제55조 제1항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,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, 그 부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, 납세자의 주소·성명, 과세표준액, 세율, 세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,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,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,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(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).

그리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,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,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(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,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만,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,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(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의 경우

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다음의 각 사실 즉, 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 3장(이하 '이 사건 납세고지서'라 한다)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부과된 사실,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 및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,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.

과세대상 토지 B 70㎡ 경락공매
취득세 2,540,860원(납기 후 금액 2,617,080원), 과세표준 19,785,009원
농특세 254,080원(납기 후 금액 261,700원)
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조 ~ 제154조

과세대상 토지+건물 C 487㎡, 건물 173.75㎡ 경락공매
취득세 38,231,720원(납기 후 금액 39,378,670원), 과세표준 264,621,802원
농특세 3,823,150원(납기 후 금액 3,937,840원)
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조 ~ 제154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과세대상 토지+건물 D 외 3필지 717.33㎡, 건물 667.91㎡ 경락공매
취득세 100,562,200원(납기 후 금액 103,579,060원), 과세표준 696,043,129원
농특세 10,056,200원(납기 후 금액 10,357,880원)
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조 ~ 제154조

앞서 본 법리에,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,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전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부 이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서 등이 원고에게 송부되었는지 여부, 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, ② 더욱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발부형식, 기재형식,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서는 5번 및 7번 주택이 각각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5번 및 7번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점, ③ 또한 5번 및 7번 주택의 부지가 아닌 B 토지가 왜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납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상당 부분 누락한 흠이 있고,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재판장 판사 박형순

판사 박소연

판사 문중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별지1

부동산 목록

1. [redacted]도 [redacted]군 D 대 374㎡
2. E 대 118㎡ 중 77/322 지분
3. F 대 25㎡
4. G 대 276㎡
5. 위 4필지 토지 및 H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슬라브지붕 3층 주택
 1층 주차장 290.12㎡, 계단실 14.31㎡
 2층 및 3층 주택 326.8㎡
6. C 대 487㎡
7.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73.75㎡
8. I 도로 48.7826㎡
9. J 대 70㎡.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별지2

관계 법령

▣ 구 지방세법(2010. 12. 27.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12조(세율)

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,000분의 20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(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.

3. 고급주택 :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. 다만,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▣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84조의3(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)

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"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1구의 건물의 연면적(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)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,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
2.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,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
3.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(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)·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(공동주택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05

을 제외한다)과 그 부속토지

4. 1구의 공동주택(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,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)의 연면적(공용면적을 제외한다)이 245제곱미터(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,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)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. 끝.